

[로스쿨 소식]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특별전형 대상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포함
-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 특별전형 선발 의무화
-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등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

### I. 개요

1. 교육부는 지난 5월 8일(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취약계층 입학기회 확대 및 법전원 학생 선발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중 “법전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선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 2. 이번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2018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법전원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전형 대상범위를 기존보다 넓히고,
  -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하였다.

#### ※ 2019학년도 법전원 입학전형부터 적용

- ◆ 법전원 특별전형 대상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이 포함되도록 근거 마련 (제14조제2항 개정)
  - \*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 →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 ◆ 개별 법전원이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 (제14조 제3항 신설)
  - \* (현행)5% 이상 선발 권고 및 이행점검 → (개선) 시행령에 7% 이상 선발 의무화 명시

(2) 또한 블라인드 면접, 선발결과 공개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입학전형에 포함하도록 하여 법전원 학생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 법전원의 입학전형계획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sup>\*</sup>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제15조제4호 신설)

\* (예시)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선발결과 공개 등

3.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법전원 입학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향후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전원 교육역량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II.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4조(입학전형의 구분)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은 법 제22조에 따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p> <p>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은 법 제22조에 따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제15조(입학전형계획의 수립·공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입학생 선발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p> <p>1. ~ 3.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제14조(입학전형의 구분 등) ① -----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을 ----- 선발하는 전형으로 한다.</p> <p>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이하 ‘특별전형’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 한다.</p> <p>③ 법학전문대학원은 매년 입학자의 100분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p> <p>제15조(입학전형계획의 수립·공표) ----- 입학자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입학전형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하는 사항</p>